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79

발의연월일: 2024. 8. 22.

발 의 자:정희용·조지연·이종배

이인선 · 신성범 · 김상훈

조승환 · 최은석 · 서천호

김석기 · 정점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상례저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수상구조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수상구조사는 업무역량에 따른 등급 구분이 없어 다양한 수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상구조사 등급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재 수상 안전 분야는 국가자격인 현행법에 따른 수상구조사와 민간자격인 인명구조요원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민간자격 신설 분야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수상 안전 분야 자격을 국

가자격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자격 유지를 위하여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또는 직전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 또는 직전 교육을 받은 날이 개인별로 상이하여 그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도 개인별 편차가 크므로 보수교육의통합적・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상구조사 자격등급을 지도사·1급·2급으로 구분하고, 수상 구조사의 보수교육을 자격증 발급일 등 기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해에 1년 내 이수하도록 하는 등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우수한 수상구조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제3항 및 제30조의7제1항 제1호·제2호). 법률 제 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구조하기"를 "구조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교육을 수행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의 등급은 지도사·1급·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를 각각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의 수상구조 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 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이 법에 따른 등급별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조(수상구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3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 해양경 |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 |
| 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 | |
| 람을 <u>구조하기</u> 위한 전문적인 | <u>구조하고 사고 예방을 위</u> |
|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 한 안전 관리・교육을 수행하 |
|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 <u>7]</u> |
| 부여할 수 있다. | |
| | |
| |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③ 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의 |
| | 등급은 지도사·1급·2급으로 |
| |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 |
| | <u>령령으로 정한다.</u> |
| <u>③</u> ~ <u>⑦</u> (생 략) | $\underline{4} \sim \underline{8}$ (현행 제3항부터 제8 |
| | 항까지와 같음) |
| 제30조의7(자격유지) ① 수상구조 | 제30조의7(자격유지) ① |
| 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 |
|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 |
| 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 | |
| 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 |
|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 | |
| 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 | |
| 다. | <u>.</u> |

- 1.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 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 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 월 이내
- ② ~ ⑤ (생 략)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u>;</u> | 3년 0 |] 5 | 티는 |
| | 날이 | 속하 | 는 | 해 | 의 | 1월 | 1 0 | 일부 |
| | 터 12 | 2월 3 | 1일 | 까지 | <u>:]</u>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u> </u> 원이 | 도 | 는 | 닐 | [0] | 속히 | 하는 |
| | 해의 | 1월 | 1일 |]부1 | 터 | 12월 | 3 | 1일 |
| | <u>까지</u> | | | | | | | |
| (2 | 2) ~ | (ই | 현 행 | 과 | 같 | 음) | | |